

부속서 II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주해

1. 제 7.4조(내국민 대우), 제 7.5조(최혜국 대우), 제 7.8조(이행요건) 및 제 7.9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는 다음의 분야에만 적용된다.

가. 제조업

나. 농업

다. 어업

라. 임업

마. 광업 및 채석업

2. 이 부속서는 인도네시아가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제1항에 열거된 분야 내에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제7.10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규정한다.

가. 제 7.4조(내국민 대우)

나. 제7.5조(최혜국 대우)

다. 제 7.8조(이행요건), 또는

라. 제 7.9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토지 및 재산에 대한 관습적 권리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및 지역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소수 부족 집단의 토지 및 재산의 관습적 권리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인도네시아공화국 1945년 헌법 제33조, 그리고 정부 정책

2. 분야	: 제조업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ISIC(하기 참조)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p>: 인도네시아는 다음 하위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외국인 지분 참여에 대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정비 및 수리 (ISIC 5020) • 특허 의약품 산업 (ISIC 2423) b. 파트너십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프라 제조업체 (ISIC 10421) • 가당 및 염장 과일과 채소 산업 (ISIC 1513) • 간장 제조업체 (ISIC 10771) • 분유 및 농축우유 가공 및 산업 (ISIC 1520) • 바둑 인쇄 산업 (ISIC 1712) • 등나무 가공 산업 (ISIC 2010) • 등나무, 대나무 및 이와 유사한 것의 보존 산업 (ISIC 2010) • 목재 제품의 제조업체 (몰딩 및 건축 자재 부품 산업) (ISIC 16221) • 에센셜 오일 산업 (ISIC 2429) • 담배 건조 및 예비 가공 산업 (ISIC 1600)

- 벽돌 및 점토/세라믹 산업 (ISIC 2691, 2692, 2693)
- 점토/세라믹 제품 산업 (ISIC 2691, ISIC 2693)
- 석회산업 (ISIC 2694)
- 시멘트제품 산업 (ISIC 2695)
- 석회제품 산업 (ISIC 2695)
- 그 밖의 시멘트 및 석회 제품 산업 (ISIC 2695)
- 못, 너트 및 볼트 산업, 엔진/터빈(원동기)의 부품 및 예비부품 산업, 펌프 및 압축기 산업, 부품과 이륜 및 삼륜 차량 부속품 산업, 자전거 및 페디캡/베짝 부속품 산업 (ISIC 2899, 2911, 2912, 3591, 3592)
- 벼·옥수수 탈곡기 및 수동 트랙터와 같은 중간 기술을 사용하는 농업 기계 산업 (ISIC 2921)
- 해양 관광 및 낚시용 목재 선박 제조업체 (ISIC 3511, 3512)
- 해양 관광 및 낚시용 목재 선박의 장치 및 부속품 제조업체 (ISIC 3511)
- 개인용 귀금속 장식품 제조업체 (ISIC 3330, 3691)
- 비개인용 귀금속 장식품 제조업체 (ISIC 3330, 3691)
- 비개인용 비귀금속 장식품 제조업체 (ISIC 3330, 3699)
- 보석 제조 (ISIC 3691)
-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공예품 제조 (ISIC 3699)
- 비금속 폐기물 재활용 (ISIC 3720)

- 사탕수수로부터의 설탕산업(백설탕, 정제설탕 및 원당)(ISIC 1542)
- 수산물가공산업: 다른 해역으로부터의 어류와 수산물의 염장 및 건조(ISIC 1512), 다른 해역으로부터의 어류와 수산물의 훈제(ISIC 1512), 어류 효모/발효 및 추출과 생선 젤리용 그 밖의 조리된 제품(ISIC 1512, 1549), 다진 어류와 연육 가공(ISIC 1512)

c. 관련 당국에 의한 추천 또는 특정요건

- 담배 산업
 - 정향 담배 산업(ISIC 1600)
 - 일반 비정향 담배 산업(ISIC 1600)
 - 그 밖의 담배 산업(ISIC 1600)
- 특수 제지 제조업체(특히 지폐용지, 수표용지, 워터마크용지)(ISIC 2101)
- 화폐 인쇄 및 특수 인쇄 산업/ 우표, 인지, 지폐 용지·수표 용지·워터마크 용지와 같은 귀중한 용지, 여권, 인구 통계 문서 및 홀로그램과 같은 보안 문서. 산업부 장관 및 국가정보기관의 특별허가 필요(ISIC 2221)
- 시클라메이트 및 사카린 산업(ISIC 2411)
- 특수잉크산업(ISIC 2429)
- 납 제련 산업(ISIC 2720)
- 생산/산출 능력이 연간 2,000M³를 초과하는 제재소 또는 제재업(ISIC 2010)
- 베니어판 산업, 합판 산업, 단판적층재 산업(ISIC 2021)
- 우드 칩 산업 및 우드 펠렛 산업(ISIC 2029)
- 제약산업용 마취제(제약산업) (ISIC 2423)

- 의료장비산업:
 - B등급(수술용 마스크, 주사기, 환자 모니터, 콘돔, 수술용 장갑, 혈액 투석액, PACS, 수술용 칼) (ISIC 2423)
 - C등급(IV 카테터, X선, ECG, 환자 모니터, 정형외과 임플란트, 콘택트 렌즈, 산소 농도계, 농도계) (ISIC 2423)
 - D등급(CT스캔, MRI, 심장 카테터, 심장 혈관 스텐트, HIV 테스트, 심박 조율기, 피부필러, 절제 카테터) (ISIC 2423)

d. 원자재 공급원에 대한 요건

- 펄프산업(나무로부터) (ISIC 2101)

e. 위 요건들의 조합

- 조각 고무 산업 (ISIC 2519)
- 폭발물용 원자재 산업 (ISIC 2411)
- 폭발성 자재 산업 및 그것의 산업용 부속품 (ISIC 2429)
- 의료장비 산업
 - A등급(면, 봉대, 스택, IV 폴, 생리대, 성인용 기저귀, 환자 침대, 훨체어) (ISIC 2423)
- 농장 사업 면허 지침에 관한 2013년 농업부장관령 제98호 및 2013년 농업부장관령 제98호의 개정에 관한 2016년 농업부장관령 제29호에 규정된 대로 25헥타르 이상 면적에서 특정 면적까지 다음 작물을 위한 작물 농장 종묘 사업 산업
 - 자트로파 커카스, 그 밖의 감미료 작물, 사탕 수수, 담배, 섬유 원료 및 면화, 캐슈,

코코넛 야자나무, 기름 야자나무, 음료 작물(차, 커피 및 코코아), 후추, 정향, 에센셜 오일 작물, 의약 제약 작물, 그 밖의 향신 작물, 수액 추출용 고무와 그 밖의 나무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작물(ISIC 0111, 0112, 0113, 0200)

- 농장 사업 면허 지침에 관한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 및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의 개정에 관한 2016년 농업부 장관령 제29호에 규정된 대로, 특정 한도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생산능력으로 25 헥타르 이상 면적에서 가공산업을 갖춘 다음 작물을 위한 농장 사업
 - 캐슈 농장 및 건조 캐슈 너트와 캐슈 너트 셀 액의 제조(ISIC 0113, 1513, 1549)
 - 후추 농장 및 건조한 백후추와 건조한 흑후추의 제조(ISIC 0112, 1513, 1549)
 - 자트로파 농장 및 자트로파 오일의 제조(ISIC 0111, 0112, 2429)
 - 사탕 수수 및 사탕 수수 설탕, 사탕 수수 상단 및 사탕 수수 찌꺼기의 제조(ISIC 0111, 1542)
 - 담배 및 건조한 담뱃잎의 제조(ISIC 0111, 1600)
 - 면화 농장과 면화 섬유의 제조(ISIC 0111)
 - 코코넛 야자나무 농장 및 코코넛 오일 제조(ISIC 0113, 1514)
 - 코코넛 야자나무 농장 및 코프라, 섬유, 코코넛 껍질 속, 가루 및 나타데코코의 제조(ISIC 0113, 1514, 1549)

- 기름 야자나무 농장 및 야자유의 제조(CPO) (ISIC 0113, 1514, 1549)
- 커피 농장 및 커피콩 탈피, 세정 및 선별 제조(ISIC 0113, 1513)
- 코코아 농장 및 코코아 콩 탈피, 세정 및 건조 제조(ISIC 0113, 1513, 1549)
- 차 및 홍차/녹차의 제조(ISIC 0113, 1513, 1549)
- 정향 농장 및 건조한 정향 꽃의 제조(ISIC 0113, 0140, 1549)
- 에센셜 오일 작물 농장 및 에센셜 오일의 제조(ISIC 0111, 0112, 0113, 2429)
- 고무 농장 및 시트 제조, 농축 라텍스(ISIC 0111, 2519)
- 커피 및 코코아 콩 이외의 곡물 농장과 커피 콩 및 코코아 콩 이외의 곡물 탈피 및 세정 제조(ISIC 1513, 1549)
- 농장 사업 면허 지침에 관한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 및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의 개정에 관한 2016년 농업부 장관령 제29호에 규정된 대로 특정 한도와 같거나 이를 초과한 다음 농산물의 제조자
 - 미가공의 식물성 및 동물성 오일 (식용유), 코프라·섬유·코코넛 껍질 솜·가루·나타데코코, 코코넛 오일, 야자유, 코코아 콩 및 커피 콩 생산물의 탈피·세정·건조 및 선별, 사탕 수수 설탕·사탕 수수 상단 및 사탕 수수 찌꺼기, 홍차/녹차, 건조한 담뱃잎, 가공하지 않은 자트로파 오일, 면화 섬유 및 면화 종자, 시트용 고무·농축 라텍스, 건조한 캐슈너트

및 캐슈너트 쉘 액용 캐슈, 건조한
백후추와 건조한 흑후추용 후추, 건조한
정향 꽃(ISIC 0111, 0140, 1513, 1514,
1531, 1542, 1549, 1600, 2429, 2519)

조치근거 : 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 제25호

농장에 관한 2014년 법률 제39호

투자 금지 사업 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령
제44호

윤활유 공급 및 서비스에 관한 2001년 대통령령
제21호

농장 사업 면허 지침에 관한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 j.o.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의 개정에
관한 2016년 농업부 장관령 제29호

의료기기 및 가정용 건강 제품 유통 인가에 관한 2017년
보건부 장관령 제62호, 그리고

정부 정책

3. 분야	: 농업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ISIC(하기 참조)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다음 하위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a. 외국인 지분 참여에 대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헥타르를 초과하는 면적에서 각 개별적 작물 종묘 또는 육성 사업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작물[쌀, 옥수수, 대두, 땅콩, 껌질콩(카사바 및 고구마 포함)]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식량 작물(ISIC 0111, 0112, 0113, 0200) - 계절 과일 작물, 포도, 열대 과일 작물, 감귤류, 사과, 인과류 및 핵과류, 장과류, 한해 야채, 다년생 야채, 약용 작물, 벼섯, 원예 작물(ISIC 0111, 0112, 0113, 0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헥타르를 초과하는 면적에서 각 개별적 작물 재배 사업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작물(쌀, 옥수수, 대두, 땅콩, 껌질콩 및 카사바와 고구마를 포함한 그 밖의 식량 작물) (ISIC 0111, 0112, 0113, 0200)

– 계절 과일 작물, 포도, 열대 과일 작물, 감귤류, 사과, 인과류 및 핵과류, 장과류, 엽채류(양배추, 겨자, 파, 셀러리), 뿌리채소(샬롯, 마늘, 감자, 당근), 열매가 열리는 채소(토마토, 오이), 칠리 페퍼, 파프리카, 버섯, 관상용 식물, 꽃이 아닌 관상용 식물(ISIC 0111, 0112, 0113, 0200, 1513)

- 다음의 각 농업 관련 활동:

- 원예 연구 및 품질 테스트 실험실, 원예 농업 관광 활동, 원예 수확 후 서비스, 꽃 소매 판매, 원예 개발 컨설턴트, 원예 조경 및 원예 과정 서비스(ISIC 0140, 2022, 7310, 9219, 9241, 9249, 5239, 7414, 7421, 8090, 9241)
- 농업 및 개발 자원과 공학에 대한 연구 및 개발, 그리고 유전자 변형 생물체 제품 과학 및 공학(유전 공학)에 대한 연구 및 개발(ISIC 7310)

b. 입지 요건

- 125 마리가 넘는 수의 돼지 사육 및 농장(ISIC 0122)

c. 위 요건의 조합

- 농장 사업 면허 지침에 관한 2013년 농업부장관령 제98호 j.o. 2013년 농업부장관령 제98호의 개정에 관한 2016년 농업부장관령 제29호에 규정된 대로 25헥타르 이상 면적에서 특정 면적까지 어떠한 가공 장치도 없는 다음 작물에 대한 농장 사업

- 자트로파 커카스, 그 밖의 감미료 작물, 사탕 수수, 담배, 섬유 원료 및 면화, 캐슈, 코코넛 야자나무, 기름 야자나무, 음료 작물(차, 커피 및 코코아), 후추, 정향, 에센셜 오일 작물, 의약 제약 작물, 그 밖의 향신 작물, 수액 추출용 고무 및 그 밖의 나무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작물 (ISIC 0111, 0112, 0113, 0200)

조치근거 : 농장에 관한 2014년 법률 제39호

가축 및 동물 보건에 관한 2009년 법률 제18호 및 2009년 법률 제18호 개정에 관한 2014년 법률 제41호

임업에 관한 1999년 법률 제41호

천연 자원과 그 생태계 보존에 관한 1990년 법률 제5호

산림 관리 계획 및 산림 활용에 대한 산림 행정 및 편찬에 관한 2008년 정부령 제3호에 의하여 개정된 2007년 정부령 제6호

식물 및 야생 동물 종의 이용에 관한 1999년 정부령 제8호

식물 재배 사업에 관한 2010년 정부령 제18호

농장의 종묘에 관한 1995년 정부령 제44호

투자 금지 사업 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령

제44호

농장 사업 면허 지침에 관한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 j.o.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의 개정에
관한 2016년 농업부 장관령 제29호

가축 분야에 대한 면허 및 등록 지침에 관한 2002년
농업부 장관령 제404호

원예 분야에 대한 면허 지침에 관한 2003년 농업부
장관령 제348호

수의서비스 지침에 관한 2009년 농업부 장관령 제2호

주요 작물 재배 사업 면허에 대한 지침에 관한 2010년
농업부 장관령 제39호, 그리고

정부 정책

4. 분야	: 임업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ISIC(하기 참조)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다음 하위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a. 외국인 지분 참여에 대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렵 공원 및 수렵 구역에서의 수렵 사업 (ISIC 0150, 9219, 9241, 9249) • 동식물 포획 번식 및 보존 기관 (ISIC 0150)
b. 파트너십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 식물의 개발: 등나무 (ISIC 2010), 소나무 수액 (올레오 송진) (ISIC 0200), 대나무 (ISIC 0200), 우드 로진/쇼레아 자바니카 (다마르) (ISIC 0200), 이글우드/아퀼라리아 말라카 천 시스 (가하루) (ISIC 0200) • 셀락, 대체 식량 작물 (사구), 수지 및 양봉의 개발 (ISIC 0200) • 누에 고치 생산 (천연견사 농사) (ISIC 0122)
c. 관련 당국에 의한 추천 또는 특정요건	

- 식물 및 야생생물 유전학에 사용되는 기술의
개발(ISIC 0200)

조치근거 : 임업에 관한 1999년 법률 제41호

천연자원과 그 생태계 보존에 관한 1990년 법률 제5호

산림 관리 계획 및 산림 활용에 대한 산림 행정 및 편찬에
관한 2008년 정부령 제3호에 의하여 개정된 2007년
정부령 제6호

국립공원 활용지역, 삼림대공원, 자연관광공원 내 자연관광
허가에 관한 2010년 정부령 제36호

식물 및 야생 동물 종의 이용에 관한 1999년 정부령 제8호

투자 금지 사업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령 제44호, 그리고

정부 정책

5.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및 지역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9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다음을 포함하는 정부 자산, 기관 또는 단체의 민영화, 기업화, 상업화 또는 주식 매각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a) 자산 소유권에 대한 제한 (b) 지분 또는 그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 (c) 자산을 통제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의 권리, 그리고 (d) 고위 경영진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국적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a) 인도네시아가 기존 공기업에 대한 지분을 다른 공기업에 이전하는 경우, 그러한 이전은 이 유보의 목적상 지분의 초기 이전 또는 처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리고, (b) 인도네시아가 여러 단계에서 기존 공기업에 대한 지분을 이전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a)호는 그러한 각 단계에 별도로 적용된다.

조치근거 : 국영기업에 관한 2003년 법률 제19호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2007년 법률 제40호, 그리고

정부 정책

6.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및 지역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9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내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Usaha Mikro, Kecil, Menengah dan Koperasi 또는 UMKMK) ¹ 에 주어지는 특별 선호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관한 2008년 법률 제20호 협동조합에 관한 1992년 법률 제25호, 그리고 정부 정책

¹ 이 유보의 목적상, 소상공인·중소기업(UMKM)의 정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관한 2008년 법률 제20호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정의는 협동조합에 관한 1992년 법률 제25호에서 찾을 수 있다. 설명의 목적상,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기준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관한 2008년 법률 제20호에 규정된 대로 다음과 같다.

- (1) 소상공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토지 및 빌딩 제외 최대 5천만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순자산을 보유할 것, 또는
 - 나. 최대 3억 루피아의 연간 매출액을 보유할 것
- (2) 소기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토지 및 빌딩 제외 5천만 초과 최대 5억 루피아의 순자산을 보유할 것, 또는
 - 나. 3억 초과 최대 25억 루피아의 연간 매출액을 보유할 것
- (3) 중기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토지 및 빌딩 제외 5억 초과 최대 100억 루피아의 순자산을 보유할 것, 또는
 - 나. 25억 초과 최대 500억 루피아의 연간 매출액을 보유할 것
- (4) 위의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결정된 대로의 명목상 액수는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7. 분야	: 어업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다음 하위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a. 파트너십 요건
	• 어류 부화장 및 양식: 바다 물고기, 기수 물고기, 민물고기 (ISIC 0502)
	b. 관련 당국에 의한 추천 또는 특정요건
	• 산호/장식용 산호초의 재배 (ISIC 0150)
조치근거	: 어업에 관한 2009년 법률 제45호에 의하여 개정된 2004년 법률 제31호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1983년 법률 제5호
	투자 금지 사업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령 제44호

포획 어업 사업 관련 PER.12/MEN/2009호에 의하여
개정된 해양수산부 장관령 PER.05/MEN/2008호

양식업 면허 관련 해양수산부 장관령
PER.12/MEN/2007호

양식업 규모 관련 해양수산부 장관령
PER.05/MEN/2009호

야생 식물 및 동물의 이용 또는 포획 및 유통에 대한
절차에 관한 산림부 장관령 447/Kpts-II/2003호,
그리고

정부 정책

8.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최혜국 대우(제7.5조) 이행요건(제7.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9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투자 장의 발효 시점에 사정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하여 인지되었거나 인지되었어야 하는 것을 제외한 분야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협정의 발효일에 ISIC Rev. 3에 명시적으로 분류되는 어떠한 분야도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하여 인지되었어야 한다.
조치근거	: 정부 정책

9.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9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간과되었던 외국인 투자자나 투자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 조치도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관련된 조치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미 시행중이어야 한다. 간과된 조치가 확인되는 경우, 부속서 I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에 신속하게 삽입될 것이다.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간과된 조치가 확인되는 경우, 인도네시아는 그 조치를 자국의 유보 목록에 포함하기 최소 90일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조치의 세부 정보와 협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유보목록에 간과된 조치의 추가를 통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투자를 한 투자자로부터 권리 또는 혜택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조치근거	: 정부 정책

10.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지역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내국민 대우는 지방정부 차원 ² 에서 투자 이행 면허/허가 ³ 의 절차적 측면에 관련된 조치에 적용될 수 없다.
조치근거	: 지방정부에 관한 2014년 법률 제23호
	지방 규정, 그리고
	정부 정책

² 이 유보의 목적상, 지방 정부 차원이란 지역 정부 수준을 말한다.

³ 설명의 목적상, 이는 위치 허가 및 건축 허가를 포함할 수 있다.

11. 분야	: 제조업·농업·어업·임업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이행요건(제7.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9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선언된 식량 안보 긴급상황의 기간 동안에만 식량안보 긴급상황을 다루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인도네시아공화국 1945년 헌법 제33조 식량에 관한 2012년 법률 제18호 식량 안보 및 영양에 관한 2015년 정부령 제17호, 그리고 정부 정책

12.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최혜국 대우(제7.5조) 이행요건(제7.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9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서비스 모드 3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정부 정책

13.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및 지역
의무의 유형	: 최혜국 대우(제7.5조)
조치내용	<p>: 인도네시아는 다음의 결과로 비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부여되는 더 유리한 대우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 간의 기존의 또는 미래의 특혜 협정이나 약정 b)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서명된 기존의 협정, 그리고 c)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국제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항공 ii. 수산, 또는 iii.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조치근거	: 정부 정책

14. 분야	: 제조업·농업·어업·임업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최혜국 대우(제7.5조) 이행요건(제7.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9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다음의 사업 분야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리화나 재배(ISIC 0111)•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록 I에 열거된 어종의 포획(ISIC 0500)• 침몰 선박에서 유가품 인양(ISIC 6303)• 건축자재/석회/칼슘, 수족관 및 기념품/보석을 위한 천연 산호와 천연의 살아있는 산호 또는 죽은 산호(최근에 죽은 산호)의 활용(채집)(ISIC 0500)• 수은 가공에 따른 클로랄 알칼리 제조 산업(ISIC 2411)• 살충제 활성 물질 산업: 디클로로 디페닐 트리클로로 에탄(DDT), 알드린, 엔드린, 디엘드린, 클로르데인, 헵타클로르, 미렉스 및 톡사펜(ISIC 2421)• 산업용 화학물질 산업과 오존 파괴 물질(BPO):

폴리 염화 비페닐(PCB), 헥사클로로벤젠 및
사염화탄소(CTC), 메틸 클로로포름, 메틸
브로마이드, 트리클로로 플루오로 메탄(CFC-
11), 디클로로 트리플루오로 에탄(CFC-12),
트리클로로 트리플루오로 에탄(CFC-113),
디클로로 테트라 플루오로 에탄(CFC-114),
클로로 펜타플루오로 에탄(CFC-115), 클로로
트리플루오로 메탄(CFC-13), 테트라클로로
디플루오로 에탄(CFC-112), 펜타클로로
플루오로 에탄(CFC-111), 클로로
헵타플루오로 프로판(CFC-217), 디클로로
헥사플루오로 프로판(CFC-216), 트리클로로
펜타플루오로 프로판(CFC-215), 테트라클로로
테트라플루오로 프로판(CFC-214), 펜타클로로
트리플루오로 프로판(CFC-213), 헥사클로로
디플루오로 프로판(CFC-211), 브로모 클로로
디 플루오로 메탄(Halon-1211), 브로모
트리플루오로 메탄(Halon-1301), 디브로모
테트라플루오로 에탄(Halon-2402), R-500,
R-502(ISIC 2411)

- 화학무기로서의 화학물질 이용에 관한 2008년
법률 제9호 부록 I에 통합된 화학무기금지협약
목록 I에 열거된 화학물질 산업(ISIC 2411)
- 알코올 성분 함유 증류주 산업(ISIC 1551)
- 알코올 성분 함유 음료 산업: 와인(ISIC 1552)
- 맥아 음료 산업(ISIC 1553)

조치근거

: 투자 금지 사업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분야
목록에 관한 2016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령
제44호, 그리고

정부 정책

15. 분야	: 에너지
하위 분야	: 10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소(부속서 I의 유보항목 18번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산업 분류	: ISIC 4010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10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소에 대한 투자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정부 정책